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I) (육계분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I. 사업개요

1.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할기반 구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 축산법 제3조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7	2008	2009(p)		
• 자금대출률(%)	95.0	91.3	90.4	97	매년말	대출추진 실적
• 적시지원율(%)	90.0	91.6	90.5	97	매년말	농업경영자금 3, 4, 5월 대출실적
• 호당대출금액 (천원)	4,500	4,293	4,295	4,500	매년말	대출금액 (신규, 연기 포함)

※ 2009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연도초에 자금이 일괄배정됨으로써 적시지원율 하향 조정

-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의 단기(1년이내) 영농자금 대출사업으로서, 중소농가의 대출만족도를 높여 지원효과 극대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농축산경영자금 - 융자	3,200,000	3,100,000	3,000,000	2,800,000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의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자(수산업 및 임업 포함).
 - ※ 다만, 농협임직원 이외의 사실확인자료 징구는 대출 신청인의 자진신고서에 의한 허위신고 시 자금회수 등에 따른 각서 징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젓소 : 30두 미만, 닭,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 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경영자금 :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 비등 축산경영비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용자로 지원

자금명	2010년도 사업비(운용규모)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28,000억원	28,000	28,00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재해대책경영자금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②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1. 사업개요

1. 목적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HACCP을 지정받아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가공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LPC 등 위생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도축장의 점유율 상승 유도
 -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항목
		2007	2008	2009		
•LPC 도축 점유율(%)	22.0	21.8	21.5	22.0 (P)	익년 1월	도축검사실적 (정부승인통계) 활용
•HACCP 적용가공장(개소)	1,100	300	350	900 (P)	당해연도 12월	전국 HACCP지정 가공장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	
합계	349,647	171,247	145,714	131,429	131,429	
용자	331,258	157,941	120,000	110,000	110,000	
자부담	18,389	13,306	25,714	21,429	21,429	
시설 자금 (소관 부서)	•소계	61,289	44,347	85,714	71,429	71,429
	- 용자(70%)	42,900	31,041	60,000	50,000	50,000
	- 자부담(30%)	18,389	13,306	25,714	21,429	21,429
(안전 위생과)	•도축장시설보완	7,000	3,082	18,126	10,000	10,000
	- 용자(70%)	4,900	2,157	12,688	7,000	7,000
	- 자부담(30%)	2,100	925	5,438	3,000	3,000
(안전 위생과)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19,286.5	8,084	28,900	18,000	18,000
	- 용자(70%)	13,500	5,658	20,230	12,600	12,600
	- 자부담(30%)	5,786.5	2,426	8,670	5,400	5,400
운영 자금 (소관 부서)	•소계	288,358	126,900	60,000	60,000	60,000
	- 용자(100%)	288,358	126,900	60,000	60,000	60,000
(안전 위생과)	•도축장 운영자금	127,457	60,116	33,850	33,850	33,850
	- 용자(100%)	127,457	60,116	33,850	33,850	33,850
(안전 위생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90,000	37,720	21,500	21,500	21,500
	- 용자(100%)	90,000	37,720	21,500	21,500	21,500

※ 재정용자사업(축산발전기금)에서 2010년부터 이차보전사업(일반회계)으로 전환

- 세부사업별 용자지원액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도축장시설보완 >

1.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닭·오리) 영업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돼지 도축장
 - 정부지원 LPC·축산물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운영자 또는 시·도지사가 자체 도축장 구조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구조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일반도축장 영업자
 -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미가입 또는 분담금 미납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닭·오리 도축장

- 2009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30%) 또는 중위등급(33%)에 해당하는 도축장 영업자
- ※ 다만, HACCP 운용수준이 중위등급인 도축장은 2009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닭의 경우 15백만수/년, 오리의 경우 3백만수/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기타가축

- 양(염소 포함)·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기존 도축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3.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등
 - HACCP시설, CO₂기절시설, 공기냉각(Air Chilling) 시설, 식용 부산물 및 혈액 처리시설, 지육 현수 운반 차량 등
 - ※ 도축영업자가 도축장 내에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
- 도축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닭·오리 등 도축장
 - HACCP 시설 등 개보수 비용
 - 오·폐수 처리시설의 개보수비용
 -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도매시장·공판장)
 -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및 개보수비용(닭·오리 도축장)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②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업체
 - 축산물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
- 신규업체
 - 도축장 부지 내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 ※ 다만, 도축장이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2009년 브랜드사업 평가결과 우수 브랜드경영체(B등급 이상)가 도축장 외부에 식육포장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식육가공업(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 영업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공통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미가입 또는 분담금 미납부)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대상

-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등
-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업체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등
 - ※ HACCP 적용 또는 계획(계약서 사본 첨부 등)중인 업체에 우선 지원

○ 신규업체

- 고품질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건물, 가공·저장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
- 공통사항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③ 도축장 운영자금 >

1.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닭 도축장
 - 2009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30%) 또는 중위등급(33%)에 해당하는 도축장 영업자
 - ※ 다만, 중위등급 도축장은 2009년 도축실적이 15배 만수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3. 지원대상

- 소·돼지·닭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일반도축장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공통사항 : 당해년도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용자 100%, 연리 0~3%, 1년 거치 일시상환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상위등급업체는 0%, 중위등급업체는 3% 금리 지원
- ※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임차)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형태를 구성하여 생산·구매·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관계없이 LPC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3% 금리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부지원 LPC : 40억원 이내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 20억원 이내
- 일반도축장 : 10억원 이내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소 또는 돼지 기준)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소 또는 돼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④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미가입 또는 분담금 미납부) 도축장을 이용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 전기료 등) 및 원료구매자금 등
- 동일업체(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용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
- 전년도 지원액,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 지원규모는 원료육 구매실적 50%,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를 적용하여 결정
- 식육가공업
-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 공통사항
-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
-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연차적으로 지원 축소)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I.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07년 79.3%(경영개선자금 최근 3개년 평균상환율)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상환율을 연 1.0%씩 제고하고 2013년 이후 84.3% 유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2007	2008	2009(p)		
· 경영회생자금 상환율(%)	82.3%	-	83.6%	90.0%	연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상환기일경과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매년 말기준)×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 농업경영 회생자금 - 융자	860,000	100,000	30,000	50,000	매년 50,000 수준

II.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진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

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2>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3>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29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집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 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다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 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

- 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 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 급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 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해져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책 문의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금융 정책과	과 장 남태현 사무관 최동순	02-500-1741 02-500-174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봉훈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축산물 도축가공 업체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최대홍 사무관 조옥현	02-500-2101 02-500-2107
		축산경영과	과 장 허태웅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이성주	02-500-2058 02-500-2064 02-500-2066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팀 장 정종훈	02-2080-6561
농업경영 회생자금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금융 정책과	과 장 남태현 서기관 이낙휘	02-500-1741 02-500-174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봉훈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 '가축분뇨처리지원' 부터는 다음호에 계속...